

한국 농업회의소의 창립과 농촌지도사업의 위상 변화에 대한 전망

오현석 · 김진호* · 김정섭*

한국지적재산관리재단

*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The Establishment of Korean Agricultural Chamber and the Perspectives on Changes in Agricultural Extension

Hyun Seok OH, Jin Ho Kim* and Jeong Seop Kim*

Korea Intellectual Property Management Foundation

* College of Agriculture & Life Sciences, Seoul National University

Summary

It is nearing the establishment of KAC(Korean Agricultural Chamber) as an institution for intensive reflection of farmer's public opinions in agricultural administration. In this study, researchers examined the management of Agricultural Chambers in France and Japan, which have experienced the action of Agricultural Chamber in advance of Korea. And discussed the anticipated change in agricultural extension taking advantage of departure of KAC.

Discourses and movements to establish KAC is putting pressure the existing agricultural extension system into innovation. Taking a side view that there were little contribution of agents belonging to the existing agricultural extension agencies, the problem of restructuring agricultural extension system has assumed very serious dimensions. Therefore, agents in agricultural extension agencies should lay their own view before the probable reorganization of agricultural extension system.

I. 서 론

농업계에 새로운 형태와 기능을 갖춘 조직이 출현을 눈앞에 두고 있다. 1999년 1월중 창립대회를 예정하고 있는 한국농업회의소의 출범은 우리나라 최대 농업단체인 농협중앙회는 물론 농민운동을 주도해 온 전국농민회총연합회, 종교적 성격의 농민운동조직인 한국가톨릭농민회와 한국기독교농민회, 농업경영인들의 이익

단체로서 근년들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 대규모 전국조직은 물론, 다양한 목적으로 설립된 시민운동적 성격의 소규모단체들과 품목별 생산자단체 등 다채로운 성격의 각종 단체들이 회원단체들로 참여하고 있다. 또한 준정부기구적 성격을 가진 기구로서 농민들에게 인식되어 왔던 농지개량조합연합회 등 농정수행관련단체들이 참여하고 있어, 새롭게 출범할 한국 농업회의소

는 우리나라 농민, 농업, 농촌과 관련해 현실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또는 그러기를 원하는) 모든 관련단체들이 망라된, 조직구성면에서 국내 최대조직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농업회의소 설립운동은 친농업적이라고 평가받고 있는 국민정부의 출범과 함께 가시화되었다. 1998년 2월의 설립준비위원회의 발족에 이어 같은 해 4월에는 발기인대회가 치뤄져 농정과 비교적 근거리에 있는 사람들은 이와 같은 움직임을 1998년 농정 가운데 가장 '뜨거운 감자' 중의 하나로서 파악하고 있었다. 농업회의소라는 용어에 생소한 사람들 가운데는 지난해 농업기구의 구조조정이 한창 진행되던 사정을 감안해 농업회의소 설립을 '옥상옥'에 비견되는 부질없는 일쯤으로 치부하는 시각이 없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이와 같은 회의적 시각은 농업회의소 출범으로 기존의 농업관련단체들이 유지하고 있는 기능이 축소되거나 잠식될 것을 우려하는 데서 비롯된 점도 없지 않으나, 농업회의소 설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기초조직 구성의 미비와 재정확보 문제를 정부에 의존하려는 듯한 모습이 그러한 비판을 불러 일으켰음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나라 농민, 농업, 농촌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단체들이 준비과정에서 드러난 상호 반복과 의견대립을 극복하고 창립대회를 치르게 된 것은 우리나라 농민운동사에 있어 획기적인 사건으로서 농민조직화가 새로운 국면에 진입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함께 한국 농업회의소의 설립은 그것이 향후 갖게 될 조직과 기능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서는 국내 농업관련기구의 현대화를 목표로 한 개편문제에 있어 기폭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60년대 이후 근대화과정에서 설립된 기존의 농업기구들은 상호 기능중복과 양적 확대를 거듭해 오다가 IMF 체제 이후 감량을 주목적으로 한 구조조정과정에 들어서 있으나 양적 구조조정과는 별개로 질적 구조조정이 요구될 전망이다. 이

러한 질적 구조조정은 농업과 농촌에 대한 사회적 요구의 변화된 현실에 근거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농업기구가 제공하게 된 공공서비스의 기능에 질적 변화가 요청될 것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농업회의소 출범의 의미를 보다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 선진외국의 농업회의소 운영사례를 검토하고, 한국 농업회의소의 설립 배경과 추진경과, 기능과 조직 등을 살펴으로써 농업회의소에 대한 관계자들의 인식의 지평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졌다. 보다 직접적으로는 외국 농업회의소의 주요기능이 농촌지도사업에 집중돼 있다는 점에서 농업회의소 출범이 향후 국내 농촌지도사업의 기능과 위상에 일정한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을 것이란 전망에서 이 분야 관계자들의 주체적인 대응노력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II. 외국에서의 농업회의소 운영 사례

1. 서유럽과 일본에서의 농업회의소의 설치

농업회의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 나라들은 서유럽의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와 서유럽 외 지역에서는 일본을 들 수 있다. 농업회의소의 운영은 산업화과정에서의 농업발전 형태에 따라 나라마다 약간씩 다르게 나타나지만 몇 가지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 농업회의소는 상공회의소에 대응한 조직으로서 산업화 과정에서 사회적 영향력을 확대해 나간 상공인들의 상공회의소 조직에 대응하여 농업계 전체의 이해를 대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둘째, 대외적으로 농업계 이해를 대변하는 방식이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차원에서 수행되는 농정에 대한 자문활동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농업회의소가 농민운동단체나 협동조합과 기능상 구분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세 번째는 대부분의 나라들에 있어서 농업회의소의 운영은 정부 보조나 혹은 다른 형태의 국

가 재정지원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그에 상응한 공공서비스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농업회의소는 농민운동의 성과라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민간기구적 성격을 갖지만, 국가 재정에 대한 상대적 의존성과 그에 상응한 공공서비스의 생산활동을 주요 기능으로 한다는 점에서 공적기구로서의 성격을 함께 갖는다.

농업회의소가 설치된 선진국들은 19세기 중반 이후의 산업화과정 속에서 유사한 농업발전 형태를 경험한 나라들이다. 대부분 가족농을 중심으로 전통적 농업구조를 유지하면서 산업화에 적응해 온 나라들로서 농본주의와 농업보호주의 전통이 강한 나라들이다. 이들 나라들에 있어 농업회의소는 19세기 후반 산업화과정에서 발생한 농업공황의 회오리 속에서 저항과 적응을 통해 국가로부터 얻어낸 제도적 기구로서 산업화되어가고 있는 사회에 대해 농업계 전체의 이해를 대변한다는 기능을 본래적으로 갖고 있다. 19세기 후반 독일과 프랑스에서 농민운동그룹들이 주축이 되어 일어난 농업회의소 설립운동은 공적농업기구설치에 따른 국가와의 의견조정과정과 농민운동그룹간의 주도권 다툼으로 오랜세월을 보낸 끝에 20세기 초에 그 결실을 보게 된다. 한편 일본은 1950년대 들어 서유럽의 농업회의소를 모델로 농업회의소를 설치하였는데, 중앙집권체적 전통이 강한 프랑스 보다는 연방제국가로서 지방분권전통이 강한 서독연방의 농업회의소를 모델로 한 점이 특징이다.

2. 외국에서의 농업회의소의 운영

1) 프랑스 농업회의소

- 1) 도 농업회의소의 의원은 11개의 선거인단의 비밀투표로 선출되며 회의소당 평균 의원수는 45명 내외로 농업경영자 그룹이 절반에 가까운 21석을 차지하고 있다. 그룹별 선거인수는 농업경영주와 가족구성원이 68%, 농업노동자와 농업법인(농업은행, 협동조합 등의 종사자) 피고용자 11%,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지주 9%, 은퇴농민 12%로 구성되어 있다. 의원 임기는 6년이며, 3년마다 한 차례의 선거를 실시해 의원의 절반을 교체한다.

가. 설치근거 및 목적

유럽 최대 농업국인 프랑스에서 농업회의소가 처음 설립된 것은 1924년 관련법이 제정되면서이며, 농업회의소 구성을 위한 첫 의원선거가 치러진 것은 1927년이다. 농업회의소 설치를 근거하고 있는 1924년 농촌법(Code rural)은 “공공기관(Pouvoir public)을 상대로 농업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자문활동을 하는 법적자문기구”로서 농업회의소를 규정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에 관한 법률을 통해 농업회의소의 공공기관적 성격을 보장하고 있다. 1960년 농업기본법은 농업회의소의 농정자문 기능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정부는 농업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농업회의소의 자문을 구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농업회의소의 농정활동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나. 조직과 구성

프랑스 농업회의소의 조직을 보면 기초조직인 도 농업회의소(94개)가 있고 중간단체인 지역에 도 농업회의소들의 지역연합체적 성격을 가진 지역 농업회의소(21개)가 있으며, 중앙(파리)에 농업회의소 상설의회(APCA, Assemblée Permanente des Chambres d'Agriculture)가 설치돼 있다. 도, 지역, 중앙으로 이어지는 농업회의소의 계통조직은 각 단계 별로 지방정부와 의회(도와 지역), 중앙정부와 국회 등을 상대로 농정자문활동을 하고 있다.

기초단위인 도 농업회의소는 비례대표제에 따라 농업계 내 각 그룹별 선거인단의 보통선거에서 선출된 의원들로 구성¹⁰되며 지역농업회의소와 농업회의소 상설의회는 각 도 농업회

의소의 의장들로 구성된다.²⁾

다. 재정

도농업회의소는 토지세의 일정부분을 국가로부터 넘겨받아 주요재정으로 하고 있다. 비건축용 토지세에 대한 부가세가 주수입(전체수입의 50% 정도)이다. 나머지는 정부 및 지자체 보조(25%)와 자체사업수익금(25%)으로 마련하고 있으며, 총회에서 의결된 예산안은 도 정부의 인준을 거쳐 농림부와 재무부의 감독을 받는다. 지역농업회의소와 농업회의소 상설의회의 재정은 도 농업회의소의 회비납부를 통해 충당된다. 상설의회는 균형기금의 운영을 통해 재정자립이 어려운 도 농업회의소가 농업회의소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라. 주요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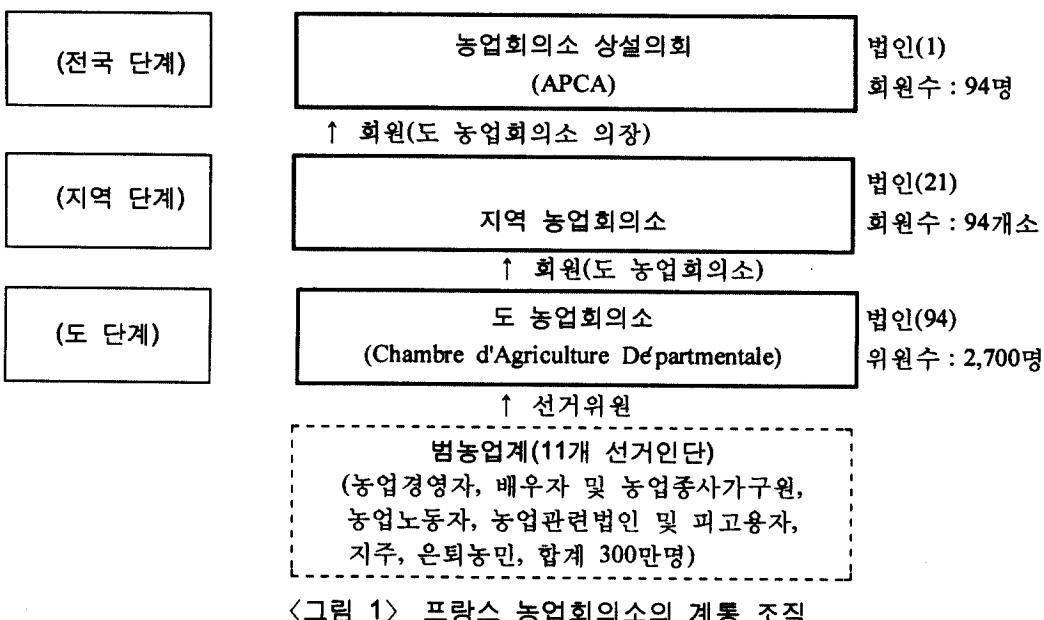
기초조직인 도 농업회의소의 기능을 주요활동을 통해 파악하면 다음과 같다.

(1) 농정활동

도의 각종 자문위원회(농지임대차 자문위원회, 토지정비위원회, 직업교육과 고용문제위원회, 수송위원회, 농업개발위원회 등)에 참여해 농업계의 이해를 대변하는 한편, 도 농업구조기본계획, 농산물시장 조직, 수협지 결정, 녹화사업, 방목지 임대료 결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농정 자문활동을 수행한다.

(2) 지도사업 및 직업교육훈련

프랑스 농촌지도사업은 1960년대 초 단순농업기술보급(vulgarisation agricole)에서 지역 농업개발(développement agricole)라는 광의의 개념으로 전환되었으며, 이때부터 농촌지도



- 2) 상설의회는 94명의 지역농업회의소 의장을 제외한 도 농업회의소 의장들로 구성되며 의장은 도 농업회의소 의장 가운데서 선출된다. 의장은 사무국을 대표하며 3명의 부의장과 사무국장, 4명의 부사무국장을 두고 있다. 또한 도 농업회의소 의장의 중앙 농정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일반위원회(농업경제 및 식품산업위원회, 농촌공간위원회, 농기업위원회, 국제관계위원회), 연락위원회(농업개발 연락위원회, 축산발전 연락위원회, 농업교육 연락위원회), 특정제충의 이해 증진을 위한 특별연구그룹을 두고 있다.

기능이 도 농업회의소를 중심으로 시행되었다. 농업회의소의 농업개발기구는 경종부문과 축산부문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전문인력을 자체적으로 충원하고 있다. 농업회의소의 농업개발센터는 작물적응시험을 위한 시험농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가운영의 농업연구기관과 긴밀한 협력관계에 있다. 농업회의소의 이러한 지역 농업개발기능은 농업경영회계센터, 협동조합, 농업교육기관, 전문생산자단체 등이 실시하고 있는 각종의 농업기술지도사업을 관리, 조정하고 있어 지역 농업개발의 중심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정부의 각종 농업인력 육성시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농업 적응교육을 비롯해 신규 영농정책과 후계자 선정에 필수적인 현장교육을 담당하고 있으며, 농업경영자교육, 농업사자격취득을 위한 현장교육, 직업동화훈련 등을 수행하고 있다. 실제로 전국 94개 도에 설치된 도 농업회의소의 현황³⁾을 보면, 농업기술지도 분야에 종사하는 직원 수가 전체의 절반을 웃돌고 있어 농업회의소의 주요 기능이 지도사업 등 지역농업개발과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3) 농촌 관광사업

농업회의소는 프랑스 최대산업인 관광업 중 녹색관광(tourisme vert)으로 불리는 농촌관광을 개발하고 이를 홍보하는 일을 하고 있다. 도 농업회의소의 농촌관광 촉진을 위한 각종사업(관광농업을 위한 정보, 교육, 기술, 행정지원과 관광농원 개발, 승마, 요트, 야영 등 부대시설의 개발 등)은 농촌관광 발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4) 단체교섭활동

도 농업회의소는 농업인들의 각종 민원에 대한 단체교섭 역할을 맡고 있다. 토목건

설공사에 따른 농지 보상문제와 농업재해시의 보상문제 등 농업인들의 단체교섭력을 필요로 하는 경우 농업회의소가 나서는 경우가 많다.

농업회의소는 이 밖에도 도의 농업관련 통계작성과 분석 등 농업관련 경제자료를 수집, 분석하고 있으며, 도에 따라 특성화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2) 일본 농업회의소

일본 농업회의소는 1951년 관련법 제정으로 설립되었으며, 독일 농업회의소의 조직 및 기능과 유사한 형태로 발전하였다. 일본은 2차대전 패전 이후 전후 복구사업을 집중적으로 펼쳐 1950년대 초반에 이르면 기존의 공업지대가 일차적으로 복구 완료되었으며, 그 후 공업지대의 외연적 확장과 새로운 공업단지 조성을 수반하는 지역개발 정책이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국가사무인 농지관리 사무를 대행하는 것을 주요기능으로 하면서 농업인들의 권익을 적극적으로 대변하기 위한 필요에서 1951년 반관반민 형태의 농업회의소가 설립되었다.

가. 설치근거 및 목적

일본 농업회의소는 '농업위원회 등에 관한 법률'에 그의 구성과 기능에 관한 법적 근거를 두고 있으며, 농업생산력의 발전 및 농업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하여 농업인의 지위를 향상하는 것을 설립목적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하에 농지문제의 공정한 처리, 경영기반 강화 촉진사업의 추진, 농업 및 농촌진흥계획의 수립·실시 등을 촉진하고, 농업·농업인의 입장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타산업부문에 대한 적극적인 이익대변을 주요기능으로 하고 있다. 농업회의소의 주요업무는 농지법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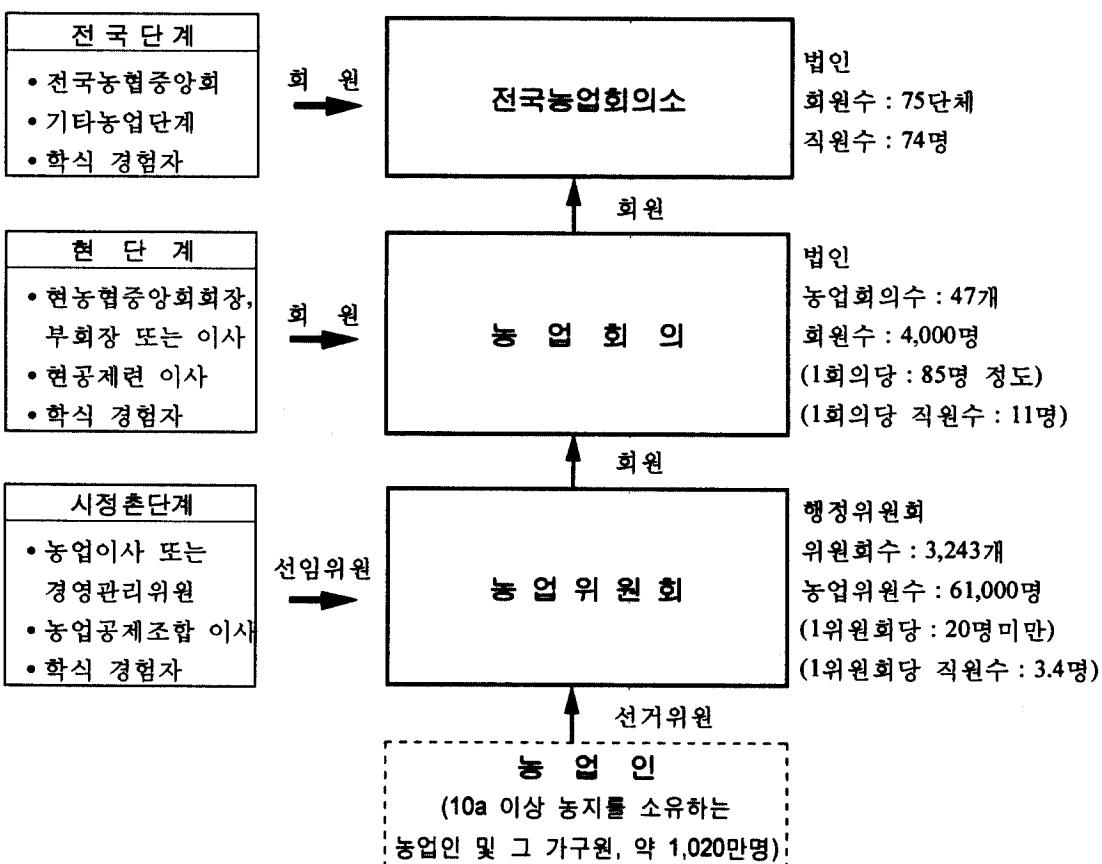
3) 94개 도 농업회의소에는 4,200명의 농업회의소 선출의원과 6,800여명의 직원이 있으며, 총예산액이 29억 프랑(약 6,400억원; 도 회의소당 약 68억원)에 달하고 있다.

련 법령사무이나, 최근에는 지역별로 농지유동화 대책, 농업인력대책, 농업생산의 재편 등 “토지 및 사람”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나. 계통별 조직과 기능

일본 농업회의소는 기초조직인 시정촌농업위원회(3,243개)와 현농협회의(47개), 중앙의 전국 농업회의소가 계통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초단위인 시정촌 농업위원회는 10a 이상 농지를 소유한 농업인이 선거에 의해 직접 선출한 선거위원과 시정촌장이 선임한 선임위원으로 구성되는데, 합의체적 성격의 행정위원회

이다. 그러나 시정촌 농업위원회는 행정기관으로서의 성격보다는 농업인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강하게 가지며, 소관업무 집행에 있어 시정촌장의 지도감독을 받지 않는다. 현 농업회의는 시정촌 농업위원회의 연합체적 성격의 법인으로서 농업위원회 회원들로 구성되며, 농업·농업인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대변활동과 농정 자문활동을 수행한다. 한편 중앙의 전국 농업회의소는 시정촌 농업회의의 연합체 성격을 갖는 법인으로서 농업문제 전반에 대한 농업인의 견해를 대변하고 중앙정부를 상대로 이를 국정에 반영하기 위해 필요한 활동들을 수행한다.



〈그림 2〉 일본의 농업회의소 계통 조직
자료 : 김태곤, 오현석, 농경토론자료, KREI, 98. 3.

다. 재정

일본 농업회의소는 프랑스와는 달리 반관반민 형태를 취하고 있어 재정수입은 주로 국가보조와 현, 시정촌의 일반회계에 의존하고 있다. 즉, 시정촌 농업위원회는 농림성 보조금(20%)과 시정촌 일반회계(80%)에서 충당하며, 현 농업회의는 농림성 보조(20%)와 현 보조금(40%), 시정촌, 농업단체 등의 찬조금(40%)으로 충당된다. 그리고 전국 농업회의소는 농림성 보조(40%)와 회원에게 부과되는 회비(60%)로 충당된다. 따라서 농업위원회의 사무소 설

치, 예산 편성, 집행 등의 업무는 시정촌장이 관할하고 있다.

라. 주요활동

일본 농업회의소의 주요활동은 농지 행정대행, 경영지도사업, 조사사업, 농정활동, 정보사업 등으로 구분된다.

(1) 농지 행정대행

일본에서는 기본법 농정 이후, 경영성과 우수한 농업경영체를 육성하고 이러한 경영체들이 지역농업의 주축이 될 수 있는 지역

<표 1>

일본 농업회의소 계통조직별 주요활동

계 통 조 직	주 요 활 동
전국농업회의소 (전국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국적인 농업·농업인의 일반적인 이익을 위한 의견의 공표 행정기관에 대한 건의, 답신 계동, 선전 조사, 연구 현 농업회의의 법령사무 이외 업무에 대한 지도·연락
농업회의 (현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업·농업인에 관한 의견의 공표 행정기관에 대한 건의, 답신 계동, 선전 조사, 연구 시정촌 농업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강습·연수 시정촌 농업위원회의 법령사무 이외의 업무에 대한 협력
농업위원회 (시정촌단계)	<p><법령업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지법에 의한 농지 이용관계의 조정 농업경영기반 강화 촉진법에 의한 업무 토지개량법에 의한 농지의 교환분합 알선 등 <p><임의업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지 이용에 관한 알선, 쟁의 방지 농지의 교환분합 알선, 기타 농지사정 개선 농업·농촌에 관한 진흥계획의 수립·실시 추진 농업생산 증진, 농업경영 합리화 및 농촌생활 개선 농업·농업인에 관한 계동, 선전 조사, 연구 의견 공표, 건의, 답신

자료 : 김태곤, 오현석, 농경토론자료, KREI, 98. 3.

농업구조를 실현하기 위해 농업경영기반 강화를 위한 구조정책이 추진되고 있는데, 우량농지 확보, 농지유동화 촉진 등 지역농업 구조정책의 추진센터로서 농업회의소가 기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지법 관련업무와 농업경영기반 강화 촉진법에 의한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2) 경영지도사업

농업경영자들의 자주적인 조직활동을 기반으로 경영관리, 마케팅, 인사노무관리 등 근대적 경영기법 도입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부기 기장연수, 인정농업인의 경영개선 지원, 법인화·법인경영의 발전 지원, 가족경영협정 추진, 농업경영자 활동 지원, 신규취농 가이드 센터 운영, 농업자 연금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3) 조사사업

농업회의소는 농업정책, 농지정책, 지역정책의 입안에 필요한 기초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는 각종 조사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전답 매매가격조사, 농지 임차료조사, 자립경영 육성에 관한 조사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4) 농정활동

농업회의소는 농업인의 의견을 국가정책에 반영시키는 것을 중요한 사명으로 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것으로는 농림수산장관의 자문에 대한 답신이 있다.

(5) 정보사업

4) 한국 농업회의소에 회원자격으로 참여하고 있는 관련 단체는 다음과 같다.

농가주부모임전국연합회, 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협회, 농수산물유통연구소, 농어촌특산단지중앙연합회,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농지개량조합연합회, 대한양계협회, 대한양돈협회, 대한잡사회, 생활개선중앙회, 시설채소생산자연합중앙회, 신농민강좌연구회,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 인삼협동조합중앙회, 임업협동조합중앙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농산물산지유통인연합회, 전국농업기술자협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업농중앙연합회, 정농회,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한국4-H중앙연합회, 한국가톨릭농민회, 한국관광농원협회, 한국기독교농민회, 한국낙농육우협회,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한국농축수산유통연구원, 한국농어촌선교단체협의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농촌문제연구소, 한국단미사료협회, 한국독립가협회, 한국민속채소생산자협회, 한국생약협회, 한국여성농민연구소,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한국염소축산업협회, 한국영농법인중앙회, 한국유기농업협회, 한국육류수출입협회, 한국임업후계자협회, 한국자연농업협회, 한국전통가공식품협회, 한국첨단농업시설협의회, 한국포도회, 한살림, 호남온실작물연구소, 흙살림연구소 (이상 51개 단체, 가나다순)

농업·농업인의 관점에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국농업신문, 全農圖書 등을 간행하고 있으며, 기관지인 「농정조사시보」를 월 1회 발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농지 기본대장의 농지정보를 수시로 파악하여 업무에 활용하기 위한 농지정보 전산화를 추진하고 있다.

III. 한국 농업회의소 설립에 따른 농촌지도사업의 위상 변화에 대한 전망

1. 한국 농업회의소의 구성과 설립목적

한국 농업회의소는 기초조직으로서 시도농업회의소를 설정하고 있으나 농업회의소 활동의 지역공간으로서 기초조직은 지역역량이 모아지는대로 차차 구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따라서 당장은 기존의 농업관련 단체를 회원으로 하여 중앙조직인 한국 농업회의소를 구성하고 있다.⁴⁾

한국 농업회의소는 설립목적으로 농업계 내부의 여러 단체들의 의견을 조정하고 대의기구로서 공공기관에 대한 자문역할을 통해 범농업계의 이해를 대변하는 것을 내세우고 있다. 이와 같은 설립목적은 농업정책이 민간과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와 공동책임 하에 수립, 시행되어야 한다는 농업계内外의 여론을 수렴한 것

으로서, 중앙부대에서의 농정자문활동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제 실시와 더불어 지방농정에 있어서도 지역농업계의 이해가 일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그간의 지적을 고려하고 있다.

2. 농업회의소의 사업활동

한국 농업회의소의 사업활동은 다음의 9개 분야에서 이루어질 전망이다.

- ① 농업인의 권익대변을 위한 대정부 협의 등 농정활동
- ② 여론조사와 연구활동
- ③ 농업인 고충 해소활동
- ④ 대국민 농업 이해증진활동
- ⑤ 농업 관련 언론, 홍보사업
- ⑥ 농업인 지원을 위한 교육사업
- ⑦ 민간 차원의 국제 통상협상과 협력사업
- ⑧ 지방 농정활동 지원
- ⑨ 농업에 관한 정부위탁 비영리사업

여기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농업인 지원을 위한 교육사업 기능과 지방 농정활동 지원, 그리고 농업에 관한 정부위탁 비영리사업 기능이 거론되고 있다는 점이다. 농업회의소가 농업인 지원을 위한 교육사업을 주요사업활동의 하나로 삼고 있는 것은 지금까지 국가가 기능을 유지해 온 농촌지도분야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⁵⁾ 더구나 해외사례에서 보았듯이 농촌지도기능이 농업회의소의 주요기능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그리고 농업회의소 기능중의 하나로 제시된 지방 농정활동 지원은 지역농업정책의 수립과 실행에 농업인들의 실질적인 참여를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농업회의소가 이미 설립되어 활동하고 있는 나라들에서 농업회의소는 지역의 농업개발센터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지방 권리기구에 대한 농업계의 의사전달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공간으로서 지역개발에 있어서 농업인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창구역 할을 하고 있다. 우리 나라도 이미 지방자치제가 시작된 지 수년이 지나 행정조직의 개편 차원을 넘어 보다 내실있는 지방자치를 도모해야 하는 상황에 와 있으며 지방 농정분야에서 그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농업인들과의 긴밀한 연계를 전제로 하는 농촌지도사업은 더욱 더 지역단위에서의 쇄신이 요청되고 있다(양승춘, 1998:393-394). 지방자치제가 시민의 보다 직접적인 참여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 단위에서 조직될 시도농업회의소는 지방 농정활동을 통해 지방농정의 자율성과 지역 농업인의 직접적인 참여를 담보하는 역할을 해나갈 것으로 판단된다. 이 경우 지방 농정의 각 분야 중에서도 특히 농업회의소가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분야는 무엇보다도 지역의 지리적, 사회경제적 특성을 감안해야 하는 지역 농업개발분야와 지역 농업인들과 농촌지도요원들의 직접적인 접촉이 이루어지는 농촌지도 사업 분야가 될 것이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무적으로 수립하게 되어 있는 '농어촌발전계획'에는 지역 농업

5) 국가가 전적으로 농촌지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농업인들의 자주적인 단체에서 독자적으로 지도사업을 계획하고 실천하거나, 국가와 공동으로 하는 경우는 아주 많은 나라들에서 그 예를 찾아볼 수 있다. 가까운 예로 대만에서는 농업인들의 자주적인 단체인 농회가 중심이 되어 국가의 지원과 함께 농민회원들에게 필요하고 합당한 지도사업을 전개함으로써 큰 성과를 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만 농촌지도사업의 조직과 형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논문을 참조. 김제기, 1994, "대만의 농촌지도 사업의 현황과 전망", 한국농촌지도학회지 제 1권 2호, pp. 133-146.)

계획이 포함되고 있으며, 이 지역농업계획은 다시 지역의 개별 경영단위의 계획으로 구체화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농촌지도사업은 지역 농업계획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⁶⁾ 따라서 농업회의소가 지방자치단체의 농어촌발전계획 수립에 참여하고, 구체적으로는 지역농업계획 수립에 참여하게 될 때, 현재 지방자치단체 소속으로 되어 있는 도 농업기술원과 시·군 농업기술센터는 농업회의소와 어떤 형태로든 관련을 맺게 될 것으로 보인다.

IV. 결 론

본론에서 살펴본 것처럼 농업계의 새로운 조직과 기능을 가질 한국 농업회의소의 출현은 기대되는 긍정적인 효과와 함께 기존 농업기구의 역할과 기능의 재편을 요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살펴 본 해외 농업회의소의 운영에 관한 사례들과 한국농업회의소의 향후 사업내용들을 볼 때 새로운 농업조직은 기존의 농업기구와 대농민 교육사업분야에서 기능이 중복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더구나 설립될 한국 농업회의소는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추구하는 시대적 추이에 따라 정부기능 중에서 민간에 이관될 수 있는 농정기능을 대행할 수 있는 공신력있는 기구로서 발전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 농업회의소의 출범은 농촌지도기능의 수행방식에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이러한 전망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농업관련 조직의 양적 구조조정에 있어서는 물론 질적 구조조정에 있어서 정책당국과 농촌지도직 관련인사들이 갖추고 있어야 할 고려사항이 되어야 할 것이다. 농업회의소가 출범단계에 이르기까지 이 분야 종사자들이 기여한 바가 매우 적다는 점은 위와 같은 전망을 고려해 볼 때 매

우 우려할 만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향후 있을 수 있는 농촌지도기능의 개편문제에 있어 관련 종사자들의 역할이 이러한 점을 고려해 적극 개진되어야 할 것이다.

V. 인 용 문 헌

1. 김재기, 1994, “대만의 농촌지도사업의 현황과 전망”, 한국농촌지도학회지 1(2):133-143.
2. 김태곤, 오현석, 1998, 일본과 프랑스의 농업회의소 운영실태, KREI 농경토론자료.
3. 양승춘, 1997, “지도고객 중심의 농촌지도사업 계획 수립 전략”, 한국농촌지도학회지 4(2):393-398.
4. 오현석, 1998, 프랑스 농업회의소 운영실태와 시사점, 농민과 사회 여름호, 농어촌사회연구소.
5. 정명채, 1998, 독일 농업회의소 운영실태, KREI 농경토론자료.
6. 한국 농업회의소 설립준비위원회, 1998, 발기인 대회자료집.
7. APCA (Assemblée Permanente des Chambres d'Agriculture), 1990, *Chambre d'agriculture*, no. 775, fév.
8. APCA (relations extérieur). 1996. *Les Chambres d'Agriculture*, fév.
9. APCA, 1994, *Les chambres d'agriculture, L'agriculture : une belle entreprise pour la France*, Paris.
10. Alamichel, B., 1991, “*Les Chambres d'Agriculture : Historique, statut, évolution et perspectives*”, in Revue Purpan, no. 158.
11. Bernadette Gain, 1994, “*Les Chambres d'Agriculture, Attributions, régime financier, fonctionnement*”, L'Information agricole, no. 672, nov.
12. Bernadette Gain, 1994, “*Les Chambres d'Agriculture, Soixante dix ans d'histoire*”, L'Information agricole, no. 671, oct.
13. Isabelle Albouy, 1997, *L'Agriculture de la France*, Eds. Milan, 1997. *Organisation Administrative et professionnelle de l'Agriculture*, Fascicule 20, 25 et 30, 1991 fév. *Editions Techniques - Juris-Classeurs*.

6) 실제로 상당 수의 시·군 농업기술센터의 지도공무원들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농어촌발전계획 작업에 파견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